

정 관

외내뜰영농조합법인

충천군 남면 남노일로 81
대표이사 이 계 형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 조합법인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서 그 명칭은 외내뜰영농조합법인(이하"조합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2 조(목적) 본 조합법인은 한살림 공동체 운동으로 생태 농업 발전과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조합법인의 사무소는 흥천군 남면 남노일로 81번지에 두고 필요시 조합원총회 또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4 조(사업) 본 조합법인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농축산물(친환경농산물 포함) 공동생산, 구매, 소분, 제조, 가공, 유통, 물류운송사업
2. 무항생제, 유기축산물생산, 가공, 유통 및 사료제조 공급사업
3. 농축산물(친환경농산물 포함)에 관련된 공동시설 설치 운영
4. 생산자 교육 및 연구용역 사업
5. 소비자 행사 및 연수원 운영
6. 학교급식사업
7. 장학사업
8. 이익잉여금 공동체 지원사업
9. 전자상거래사업
10. 부동산 임대업
11. 국제연대사업과 연결된 수출
12. 위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

제 5 조(협동조합에의 가입) 본 조합법인은 농업협동조합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한다.

제 6 조(광고방법) 본 조합법인의 광고는 본 조합법인의 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 1항의 광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 7 조(규정의 제정) 이 정관에서 정한 것 이외 업무의 집행, 회계, 직원의 채용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 장 조합원 및 준조합원

제 8 조(조합원의 자격) ① 본 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농업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나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축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만 20세 이상의 성년으로서 본 조합법인 설립취지에 찬동한 자
3. 출자할 수 있는 농지, 현금, 농기계, 가축, 기타의 현물을 소유한 자.
4. 본 조합법인의 조합원은 한살림생산자연합회의 흥천생산자연합회 회원 이어야 한다.

② 본 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단체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공동체(대표자), 협동조합, 농업 법인, 한살림 관련 협력업체로 한다.

③ ①항의 요건을 갖추고 출자금(보관금)이 100만원 이상인자 이어야 한다. 단, 조합원의 가입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한다. ②항의 요건을 갖추고 출자금(보관금)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 9 조(준조합원의 자격) 본 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본 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
2. 본 조합법인에 농지를 임대 또는 농지의 경영을 위탁하는 자.
3. 본 조합법인이 생산한 농림수산물을 대량으로 구입, 유통, 가공 또는 수출하는 자.
4. 본 조합법인에 출자금(보관금)을 납부한 자.

제 10 조(가입) ① 본 조합법인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혹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가입신청서를 본

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생산자단체의 경우는 제9조, 제3호 및 사업자등록증(혹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한다.

1.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2. 가족관계
3. 납입 혹은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및 출자의 목적인 재산
4. 경영 규모(경지면적, 농축산물의 연간판매액) 및 연중 농업종사일수

② 본 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3 호 및 제 9조에 의한 준조합원의 자격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자 등록이 된 자(법인포함)는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 대신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한다.

③ 조합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그 가입 여부를 결정하고, 가입을 승인한 때에는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하여 출자의 불입(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게 한 후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 명부에 기재한다.

④ 가입신청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불입함으로써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자격을 갖는다.

⑤ 출자좌수를 늘리려는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 대해서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1 조(권리) ① 본 조합법인의 조합원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합법인의 공동작업에 종사하여 노동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을 권리
2. 지분 환불에 대한 청구권
3. 조합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4. 조합법인의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공동체(대표자)조합원 피선거권)
5. 조합법인의 제반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리
6. 조합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리
7. 조합법인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및 감사의 권리

② 제 1항 제 1호의 준조합원의 노동과 대가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출자의 다소에 관계 없이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④ 본 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은 제 1항 제 2호, 제 3호 및 제 6호의 권리를 갖는다.

제 12 조(의무) ① 본 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 할 의무
2. 조합법인에 대한 출자 의무
3. 조합법인의 제반 노동에 참가하고 노동규정을 준수할 의무
4. 총회에 출석할 의무와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5. 조합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

② 본 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의 의무는 제1항의 제1호, 제2호 및 제5호와 같으며 제4호 중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도 있다.

제 13 조(탈퇴)①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당해 회계 연도 말까지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본 조합법인에 예고하여 탈퇴하며 그에 따른 모든 정산은 다음 해 총회 후 회계 연도말에 한다. 단, 직원이 납입한 금액은 직원 퇴사 시, 이직 또는 사망자는 회원탈퇴서와 출자금 반환 요청서 접수시 정산한다.

②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자연 탈퇴된다.

탈퇴시 지분은 100% 지급한다.

1. 제 8조에 의한 조합원 및 제 9조에 의한 준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2. 사망
3. 파산(법인의 경우 파산 또는 해산)
4. 금치산 선고
5. 제명
6. 지분을 전부 양도하였을 경우
7. 흥천생산자연합회 회원 탈퇴시

③ 제2항 제1호의 자격상실은 이사회 의 결의에 의한다.

④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법인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있는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제 14 조(제명) ①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 결의로써 제명할 수 있다.

1. 제12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조합법인을 빙자하여 부당 이익을 취한 경우
4. 3년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때

- ② 조합법인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제명 대상 조합원에게 이사회 개최 10일전에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이사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명을 결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출자와 적립금 및 지분

- 제 15 조(출자) 1. 본 조합법인에의 출자는 현금, 농지, 및 농기계, 차량, 창고 등 기타의 현물을 이사회에서 정하는 납입일자에 일시 납입한다.
2. 농지, 농기계 등 현물의 출자액 산출은 이사회(설립시는 창립총회)에서 정하는 평가율에 의하여 환가한다.
3. 1좌의 금액은 금 10,000 원으로 한다.
4. 조합원은 100좌 이상의 출자를 불입하여야 하며,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조합법인 총 출자좌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합법인에 농지를 출자하는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성명, 출자대상농지 및 그 국가공인 평가원의 평가액과 시가를 감안하여 이사회 의결로 출자 좌수를 정한다.
6. 현물로 출자한 농지는 해당농지를 출자한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7. 준조합원이 출자하는 출자액의 합계는 그 조합법인의 총출자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8. 조합원 및 준조합원은 당조합법인을 통하여 출하하는 농산물 가격의 1%를 의무 출자한다. 단, 출자율(%)는 매년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제 16 조(출자증서의 발행) ① 조합법인은 출자를 불입한 조합원에게 지체없이 출자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출자증서는 대표이사 명의로 발급하고 출자좌수, 출자액, 출자재산의 표시(토지의 경우 지번, 지목, 면적을 말한다)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조합법인이 토지 등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증자 재분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 1항과 제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17 조(출자의 균등화) 조합원의 출자를 균등화 할 목적으로 소액출자자에게 그 사정을 고려하여 총회의 의결로써 회계연도말에 증자를 허용할 수 있다.

- 제 18 조(법정적립금) 본 조합법인은 출자총액과 같은 금액이 될 때까지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다.

제 19 조(사업준비금) 본 조합법인은 장기적인 사업확장 및 다음 연도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을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다.

제 20 조(임의적립금) ① 본 조합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18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준비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본회의 사업 목적에 맞는 사업비 등 특수목적에 맞게 지출할 수 있다.

제 21 조(자본적립금) 본 조합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생기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한다.

1. 재산평가 차익
2. 합병에 의한 차익
3. 인수재산 차익
4. 외부로부터 증여된 현물 및 현금
5. 국고보조금 등
6. 감자에 의한 차익
7. 고정자산에 대한 보험차익

제 22 조(적립금 등의 사용 및 처분) ① 제 18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과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준비금,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적립금,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립금(이하 '자본적립금' 이라 한다)은 조합법인의 결손을 보전하는데 사용한다.

②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자본적립금은 조합원의 탈퇴나 제명시 지분으로 환불할 수 없다.

③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준비금(이하 '사업준비금'이라 한다)은 조합원이 가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탈퇴하거나 제명되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없다.

④ 사업준비금과 임의적립금을 사업에 필요시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 23 조(지분의 계산) 본 조합법인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1. 납입출자금에 대하여는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매 회계 연도마다 이를 계산한다.

단, 그 재산이 납입출자액의 총액보다 감소 되었을 경우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2. 사업준비금은 사업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고 총회 의결시 전 조합원에게 분할하여 가산하되 제 35조 제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4 조(지분의 상속) ① 조합원의 상속인으로서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분 환불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가 즉시 조합법인에 가입을 신청하고 조합법인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분을 승계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의 가입신청과 조합법인의 가입승인은 제 10조 제 1항 내지 제 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5 조(조합법인의 지분취득금지) 본 조합법인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수입하지 못한다.

제 26 조(지분의 양도, 양수 및 공유금지) 조합원은 총회의 승인의결 없이는 그 지분을 양도, 양수할 수 없으며 공유할 수 없다.

제 27 조(탈퇴, 제명시의 지분 환불) ①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의 지분을 현금 또는 현물로 환불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2년동안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으로 처리한다.
② 환불재산 가운데 토지나 건물 등이 조합법인의 공동경영 조직을 깨뜨릴 염려가 있어 환불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토지 및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
③ 탈퇴조합원이 출자한 토지가 공동경영의 결과로 인하여 지력이 증대되었거나, 노력과 자본의 투자로 인하여 가치가 상승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토지를 환불 받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④ 탈퇴조합원이 조합법인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해야 될 지분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⑤ 지분의 환불은 당해 회계 연도말에 한다.

제 28 조(출자액의 일부환불) 본 조합법인은 조합원, 준조합원을 탈퇴하지 않는 한 일부를 환불 할 수 없다.

제 4 장 회 계

- 제 29 조(회계연도) 본 조합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 제 30 조(자금관리) 본 조합법인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1.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은행, 신용금고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정부보증채권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증권의 취득
 3. 상장법인의 증권의 취득 또는 그 취득을 위한 예치.
- 제 31 조(경리공개) 본 조합법인의 모든 장부는 사무소에 비치하여 항상 조합원에게 공개하며 주요계정에 대한 내역은 정기적으로 게시한다.
- 제 32 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본 조합법인은 조합법인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 33 조(선급금제) 조합법인은 조합원에게 지불할 노임을 회계연도 말 결산 전에 선급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
- 제 34 조(차입금) 조합법인은 제 4조의 사업을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담보대출이나 신용보증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제 35 조(수익배분 순위) 본 조합법인의 총수입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배분한다.
1. 제세 공과금
 2. 생산 자재비, 임차료, 고용노임 및 생산부대 비용(제잡비를 말한다)
 3.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조합원 노임
 5. 자산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6. 이월 결손금 보전
- 제 36 조(잉여금 처분) ① 조합법인의 결산결과 발생된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제 18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준비금, 제 20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적립금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조합원에 대한 배당은 배당할 잉여금의 100분의 30은 조합원에게 균등하게 배당하고 나머지 100분의 70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③ 배당을 실시한 후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할 수 있다.

제 37 조(손실금 처리) 조합법인의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미처분 잉여금으로 보전하고, 미처분잉여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사업준비금, 임의적립금, 법정 적립금, 자본적립금의 순서로 보전하며,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차 년도에 이월한다.

제 5 장 임 원

제 38 조(임원의 수) 본 조합법인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명
2. 이사 15명 이내로 한다.
3. 사외이사 2명 이내로 한다.
4. 감사 2명

제 39 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1. 대표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호선하며 조합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법인의 이사 및 감사는 흥천생산자연합회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선출한다.
3. 법인의 사외이사는 한살림생활협동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가 요청 한자가 된다.
4. 선출된 임원은 등기임원이 된다. 단, 사외이사는 등기를 아니하여도 된다.

제 40 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이사로 구성하며 대표이사가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이사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각 공동체 대표, 생산자연합회사무국장, 법인상무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정기 이사회는 개최 후 2개월 이내에 반드시 개최하여야 한다.

제 41 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 할 안건
2. 업무를 운영하는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3.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의결
5.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6. 규정의 제정 및 개정
7. 기타 조합법인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 42 조(이사회사록)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간사가 기록하여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한 후 보관한다. 단, 이사회 간사는 법인직원으로 한다.

제 43 조(임원의 의무) ① 대표이사는 본 조합법인을 대표하고 본 조합법인의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조합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합법인의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 경영 전반에 의견을 개진하며 심의의결권을 갖는다. 또한 이사회에서 미리 정한 순서로 유사시 경영권을 대행한다.

③ 감사는 회계연도마다 조합법인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1회 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필요시 외부회계법인에 요청하여 법인의 재정 및 회계를 감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4 조(임원의 책임) ① 본 조합법인의 임원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기관의 처분과 정관규정, 사업 지침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본 조합법인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태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법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단독 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이사회가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법인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구성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조합법인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회의에서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구성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 2항 내지 제 3항의 구상권의 행사는 이사회에 대하여는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와 이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임원 전원에게 대하여는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 대표가 이를 행한다.

- ⑤ 임원은 재직기간 중 알게된 법인의 대외문서나 기밀문서에 대해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하거나 다른 곳에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법인에 해를 주었을 경우 모든 책임을 진다.

제 45 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3년, 감사는 4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단, 대표이사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6 조(임원의 해임) 조합원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동의를 얻어 총회에 해임을 요구하고 총회의 의결로서 해임한다.

제 47 조(임원의 보수) 상근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여비 등 필요한 경비는 별도 규정에 의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1. 이사회에 참석한 임원에 대해서는 경비를 지급한다.

제 48 조(서류비치의 의무)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조합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규정
2. 조합원과 준조합원 명부 및 지분대장
3. 총회의사록
4. 기타 필요한 서류

② 대표이사는 정기총회 1주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6 장 회의의 운영

제 49 조(총회) ①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총회는 대의원총회로 갈음 할 수 있다. 단, 51조 2항은 대의원 총회로 갈음 할 수 없다.

③총회의 대의원 구성과 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④대의원 총회에 대하여는 정관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 50 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회계연도마다 1회 3월 이내에 대표이사가 소집 하며 대표이사는 총회소집 5일전까지 회의내용과 회의자료를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임시총회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1. 대표이사 직무를 행할 자가 없을 때
2. 제 2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대표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2주일 이내에 총회소집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
3. 감사가 조합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사업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신속히 총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

제 51 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 합병 및 분할
3.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승인, 책정과 변경
4. 사업보고서, 결산, 잉여금 처분 및 결손금 처리
5. 출자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선출
7. 임기 중 임원의 해임
8.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52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해산, 합병 또는 분할

③ 제 1항의 총회소집이 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다시 소집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제50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53 조(의결권의 대리) ①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은 조합원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성년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54 조(의사록의 작성)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총회에서 선출한 2인 이상의 조합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 55 조(회의내용 공고) 총회의 의결사항은 제 6조의 공고방법에 의하여 공고한다.

제 7 장 해 산

제 56 조(해산) 본 조합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된다.

1. 총회에서 해산 및 합병을 의결한 경우
2. 파산한 경우
3. 조합원이 5인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인 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

제 57 조(청산인) 본 조합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은 대표이사가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58 조(청산인의 직무) ①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청산사무가 종결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인은 그 취임 후 3주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 59 조(청산재산의 처리) 해산의 경우 조합법인의 재산은 채무를 완제하고 잔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1. 출자금액은 출자조합원에게 환급하되 출자총액에 미달시는 출자액의 비례로 분배한다.
2. 자본적립금, 법정적립금, 사업준비금, 임의적립금은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제 8 장 보 칙

제 60 조(준용규정) 제 6조 제 1항, 제 14조, 제 16조, 제 22조 제 2항 및 제 3항, 제 23조 ~ 제 29조, 제 59조는 준조합원의 경우에 적용한다.
본 정관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 2005년 4월 15일)

- 1차정관개정 : 2007년 5월 28일
- 2차정관개정 : 2010년 4월 28일
- 3차정관개정 : 2010년 7월 14일
- 4차정관개정 : 2011년 5월 4일
- 5차정관개정 : 2011년 8월 9일
- 6차정관개정 : 2011년 12월 19일
- 7차정관개정 : 2012년 3월 29일
- 8차정관개정 : 2013년 2월 28일
- 9차정관개정 : 2014년 2월 24일
- 10차정관개정 : 2016년 2월 22일
- 11차정관개정 : 2017년 2월 24일
- 12차정관개정 : 2019년 2월 22일

2005 년 4 월 12 일

외내뜰영농조합법인

발기인 연 익 흥 (510206 - xxxxxxxx)
홍천군 남면 명동리 493 - 2

발기인 최 흥 식 (520503 - xxxxxxxx)
홍천군 서면 반곡리 449

발기인 권 익 희 (561201 - xxxxxxxx)
홍천군 남면 유치리 55

발기인 김 성 철 (551211 - xxxxxxxx)
홍천군 서면 어유포리 73 - 8

발기인 오 성 근 (660227 - xxxxxxxx)
홍천군 서석면 청량리 515

발기인 신 동 석 (621014 - xxxxxxxx)
홍천군 남면 유치리 1024

발기인 김 승 제 (610209 - xxxxxxxx)
홍천군 서면 반곡리 220-2

발기인 고 영 민 (640801 - xxxxxxxx)
홍천군 남면 명동리 525-1